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18 선고 2021가단3821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4. 27.

판 결 선 고 2021. 5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0,246,575원과 그중 50,000,000원에 대하여 2020. 7. 3.부터 2021. 3. 30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조규설

별지